



## 내부감사규정

제 정	:	2008. 3. 1
개 정	:	2018. 9. 5
개 정	:	2019. 7. 8
개 정	:	2022. 2. 11
개 정	:	2022. 12. 27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인감사와의 관계)** 이 규정에 의한 감사는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한다. <개정 2022. 2. 11.>

**제2조의2(감사사항)** 감사는 회계, 조직, 인력, 학사, 산학협력단 등 기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2. 11.>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.

**제4조(감사의 구분)** ①감사는 정기 감사, 수시 감사로 구분한다. <개정 2022. 2. 11.>

②정기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중 실시하며,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2. 2. 11.>

③수시 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11.>

**제4조의2(감사방법)**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에 의한다. <신설 2022. 2. 11.>

②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부서의 현장에서 실시한다. <신설 2022. 2. 11.>

③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부서에 관계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 <신설 2022. 2. 11.>

**제5조(감사의 주체)** ①감사부서는 경영관리처에서 관장하고, 감사반장은 경영관리처장이 수행한다. 단, 경영관리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반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2. 2. 11.>

②감사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감사인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. 이때,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11.>

③감사반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, 외부 감사인의 경우 1/2선을 넘지 않는다. <개정 2022. 2. 11.>

**제5조의2(감사독립의 원칙)** 감사반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2. 2. 11.>

**제6조(협조)** ①감사반은 피감사부서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증언, 기타

감사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11.>

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
감사반은 감사업무 수행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감사중 지득한 사항은 총장에게만 직접 보고한다. <개정 2022. 2. 11.>, <개정 2022.12.27.>

**제8조(보고)**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와 소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2. 11.>, <개정 2022.12.27.>

②감사보고서는 총장이 결재한 후에 이를 수정할 수 없으며 경영관리처장 책임하에 보관한다. <개정 2022. 2. 11.>, <개정 2022.12.27.>

**제9조(감사결과처리)** ①총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7.>

②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감사결과에 대해 구성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2. 11.>

⑤감사결과에의 공개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2. 2. 11.>

**제10조(상벌)** ①총장은 감사결과 특히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 또는 단위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.

**제11조(이의신청)** ①피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명백히 하고,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감사반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12.27.>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